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통계생산 현황과 과제

*The Current Status of Statistics Produced  
by the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장영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차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각종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지자체 복지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10년 구축되었다. 최근 들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와, 공공부문 빅데이터 활용과 가치에 대한 관심 고조로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자료원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보장통계의 작성의 의무화 되면서 일부 분야의 통계 생산에 대한 기대가 부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 하에, 본 고에서는 맞춤형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근거 제공 측면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생산하는 통계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 1. 서론

빅데이터(Big Data)가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민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까지 빅데이터의 활용과 잠재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국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이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정부 3.0)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어 빅데이터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자료원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일례로 2011년 국가정보화전략위원

회<sup>1)</sup>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자료를 기반으로 복지대상자 발굴 및 욕구분석을 통한 맞춤형 복지 제공방안을 빅데이터 활용 시나리오로 제시하였고, 2012년에는 ‘빅데이터 마스터플랜’<sup>2)</sup>을 수립하면서 공공부문 빅데이터 활용 현황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더욱이 2013년 1월부터 전면 개정·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통계 작성 및 관리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정책 통계 생산 측면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대한 기대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1)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2011),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안).

2)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2012), 스마트 국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플랜.

이러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대한 기대는 정부의 맞춤형 복지정책에 대한 의지와 빅데이터로부터의 잠재 가치 창출에 대한 관심 고조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대한 기대는 근거 기반의 정책 실현을 위한 통계 제공의 필요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정책적 근거 제공 측면에서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생산되고 있는 통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통계생산 현황과 제한점

###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기존 안전행정부 새울지방행정시스템에서 복지분야를 분리하여 각종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정보시스템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기능 중심으로 크게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 상담사례관리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은 표

준화 된 복지업무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별·가구별 복지대상자 관리, 상담·신청 내역, 보장가구 조사·결정 정보, 급여지급 내역, 중복·누락·부적정 수급 관리 등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상담사례관리시스템은 복지서비스 안내상담, 사례관리, 서비스연계 모니터링 등의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관련 복지업무를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시설 일반행정, 서비스이력 등을 수집 관리하고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시설수급자 및 종사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관리되는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는 123종에 달하며, 2013년 7월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1,694만명의 복지대상자의 자격<sup>3)</sup> 및 수혜이력<sup>4)</sup> 정보가 통합관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 영유아보육, 장애인연금, 긴급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가족복지 등 3개 부처 103종의 사회복지급여 서비스의 수혜이력 정보와 8개 부처 115종의 급여서비스 자격정보가 관리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16개 부처의 296종 복지사업<sup>5)</sup> 중 118종의 사업 정보가 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sup>6)</sup>.

###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통계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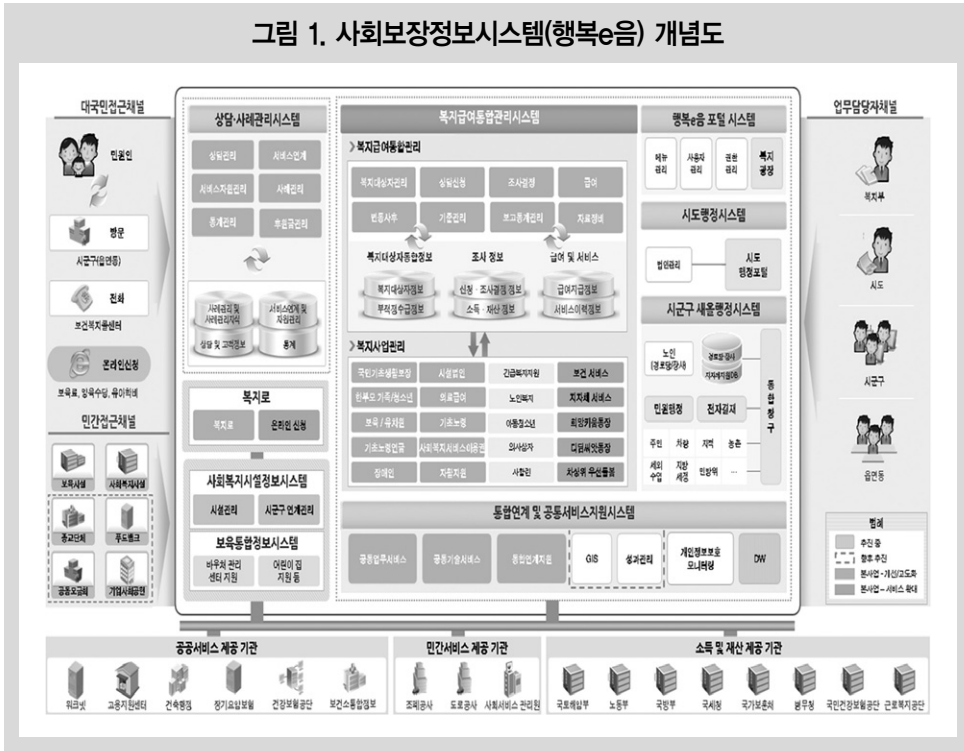
3) 가구 및 개인의 소득재산 정보, 인적정보, 부양의무자 정보 등

4)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지원내역

5) 보건복지부, 2012년 범정부 복지정보연계 사업안내 참조.

6) 장영미 외(2012). 보건복지사업 산출통계 분류·분석: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산출통계를 중심으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그림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념도



복e음)의 자료는 표준화된 복지사업 프로세스에서 양산되는 복지정보, 각 복지사업별 정보, 상담사례관리 정보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근간으로 복지정보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정보통계시스템은 중앙부처의 정책의사결정과 지방자치단체 복지업무 담당자의 업무에 필요한 통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이 시스템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 공무원, 시도 및 지방자치단체 복지공무원, 기타 유관기관 업무담당자가 소속기관과 업무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아 이용하고 있다. 통계 서비스는 크게 대시보

드(dashboard), 정형통계, 비정형통계(OLAP)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계 설명서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2).

정형통계는 이용자의 수요로부터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된 통계를 이용하는 서비스로,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시설·법인, 아동청소년, 보육, 한부모가족, 결혼중개업, 자활지원, 기초노령연금, 의료급여, 의사상자 등 개별사업 및 통합적 관점에서 복지사업 수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통계는 공통적으로 지역별(시도, 시군구, 읍면동), 시점별(년, 월)로 산출되고 있으며 수급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수급가구 특성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산출되고 있다(표 1).

그림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복지정보통계시스템 메인 화면



이 외에 비정형통계는 OLAP(OnLine Analytic Processing) 방식의 통계서비스로, 사용자가 준비된 자료(복지대상자,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시설/법인, 아동청소년, 보육, 한부모가족, 결혼중개업, 자활지원, 기초노령연금, 의료급여, 의사상자, 차상위계층, 노인, 바우처, 민생안정, 사후관리, 상담사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급여지급현황 등으로 구분)를 분석하여 필요로 하는 통계를 직접 산출하는 형태로 서비스 되고 있다.

### 3) 국가복지통계로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산출통계의 제한점

#### (1) 사업현황 및 실적 중심의 통계생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통계는 지역별로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단위까지 산출 가능하며 시점별로는 연도별, 월별 산출이 가능하다. 시점 별, 지역단위의 복지통계를 산출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작성되는 통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러나 현재 산출되는 통계는 시스템 사용자 즉,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수요로부터 생성되어 대

표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복지정보통계시스템)의 산출통계 요약

구분		산출통계 종류	구분		산출통계 종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아동청소년 복지	청소년복지	특별지원청소년
		수급가구			청소년증 발급
		급여액	보육		영유아보육료
		소득,재산			양육수당
		부양의무자			유아학비
		신청탈락 가구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 지원수급
장애인복지		등록장애인	결혼중개업		업체수
		장애인연금 수급			종업원
		장애수당 수급	자활사업		자활참여
		장애아동수당 수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장애인자녀교육비수급			신청자
시설·법인		사회복지시설	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종사자			사례관리대상
		시설입소자			신청자
아동청소년 복지	아동복지	요보호아동	의사상자		인정자
		소년소녀가정아동			상담사례관리
		장애입양아동	통합정보		신청자
		국내입양아동			급여지급
		가정위탁보호아동			보장탈피
		지역아동센터			
		시설보호(퇴소) 아동			

부분의 통계가 업무지원 및 실적파악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현 수준에서 지역복지계 획수립 자료로 지원 가능한 범위는 현황통계에 그쳐, 계획 수립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개발 필요성에 대한 여지를 두고 있다.

더 나아가 복지정책 수립 시점 및 이행과정 단계에서 현황 중심의 통계가 필요하다면, 이행 단계 후에는 관련 정책이 수혜 대상자에게 어떤 변화를 초래하였는지, 정책목표를 달성하였는지 등의 성과 평가에 초점을 맞춘 통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업 현황을

파악하는 통계가 대부분이어서 사업 성과를 가 능하는 통계의 발굴이 요구되는 상태이다.

(2) 제한된 통계 이용자와 서비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기 조사된 16개 부처 296종의 복지사업 중 40%(118종)에 해당되는 복지사업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범 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으로 그 수는 점차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적지않은 복지사업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나 이 자료로부터 생산된 통계의

주 이용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통계서비스가 제공되는 방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이차원 분할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시보드(dashboard)를 이용하여 주요 통계를 시각화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사용자의 다양한 통계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편으로 OLA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용방법이 어려워 활용이 미미한 수준이다.

### 3. 생산통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과제

#### 1) 사회보장통계 작성 지원

2013년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여러 부처가 사회보장정책을 관장함에 따라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보장 관련 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명문화하며 해당 부처의 사회보장통계 작성을 의무화하였다(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 이는 근거기반 사회보장정책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일반적인 사회보장의 세 가지 범주(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중 의료급여를 제외한 현금급여 형태의 공공부조, 그리고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통계를 산출하고 있어 행정기

관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통계의 일부분을 작성·지원할 수 있다. 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 사회복지지출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보험과, 국세청 등의 세제 감면, 근로장려세제 등의 조세복지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나, 취약계층에 대응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원으로써의 강점을 갖는다. 따라서 수급현황 통계뿐만 아니라 수급이력정보와 자격 정보를 활용하여 현재 산출하고 있지 못한 수급자의 복지 조합과 수급자의 사회경제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보장통계 발굴이 필요하다. 더불어 신뢰성 높은 사회보장통계를 지원하기 위해 산출통계의 품질 제고와, 복지사업 간 체계적인 통계 산출 및 가공을 위한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2)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별 통계 지원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복지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계획을 수립할 것을 법적의무로 강제하고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

구체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지역계획은 ①지방자치단체 주체가 되어 수립되는 계획이며, ②지역사회의 실태를 바탕으로, ③보건, 복지, 고용, 주거 등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내용들을 포괄하는 종합적 지역 사회보장계획으로 정리된다<sup>7)</sup>. 이는 지역계획 수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실태 파악과 지역주민,

특히 취약계층의 욕구 파악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사회보장기본법이 의도하는 지역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간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통상적으로 포함하였던 지방자치단체 면적, 인구 수 등 지역실태 개관과 서베이 방식의 욕구조사 방식을 쉽게 떠올릴 수도 있겠으나, 지역계획의 변화된 위상을 고려한다면 그 이상의 정보가 요구될 것이다. 실제로 과거 지역복지계획에 포함되는 지역 거시 정보에 입각한 지역 실태 개관은 세부 복지 실행계획의 도출로 연결되기에는 연관성이 부족하였고, 욕구조사 또한 주로 유의표집 방식을 채택하거나 충분한 사례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지역주민, 혹은 취약계층의 욕구로 일반화하는 데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다.

따라서, 시군구 단위로 복지사업 수급자 정보와 급여 정보를 월별로 산출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통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한 지방자치단체별 복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원이 될 것이다. 특히, 복지사업 이용자, 신청자, 탈락자 등에 대한 다양한 통계자료는 지역사회 전문가에 의해 취약계층의 규범적 욕구(normative need)를 진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욕구조사와 병행한다면 서베이 조사로 파악되는 지역주민의 인지욕구(felt need)와 표현욕구(expressed need)를 보완할 수 있다.

더욱이 지역단위 복지사업 수급자, 급여수준 등의 집계통계를 인구구성, 고용특성 등 몇몇 성향 점수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를 준거집단과 비교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교욕구(comparative need)를 탐색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를 다각적으로 고려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sup>8)</sup>.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복지계획 수립 시에 기(既) 생산통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필요 통계를 보완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3) 복지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 생산·제공

정부의 성과관리의 중요한 한 축에는 정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업무평가가 있다. 정부업무평가는 중앙정부를 평가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는 것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

7) 강신욱 외(2012).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과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 Bradshaw(1977)는 욕구의 종류를 규범적 욕구, 인지적 욕구, 표현적 욕구, 비교적 욕구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욕구별로 상이한 욕구의 진단과 처방에 대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정책 사업 수립 시 원칙적으로 다음 네 가지 욕구를 파악해 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Bradshaw의 욕구종류별 진단과 처방〉

구분	진단	처방
규범적 욕구	전문가 판단으로 충족되지 않은 욕구 진단	전문가 판단으로 최선의 서비스 규정
인지적 욕구	잠재적 클라이언트가 문제와 욕구를 진단	욕구를 갖는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표현적 욕구	잠재적 클라이언트가 직접 자신의 문제를 진단	수요로 나타난 서비스
비교적 욕구	전문가나 사회가 각종 사회지표의 비교로 진단	서비스 이용률 비교로 유사한 서비스 필요성 인정

한 평가는 1999년부터 실시하여 각 부처 해당 시책에 대해 합동평가와 아울러 개별평가를 운영해 왔으나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2008년부터는 행정안전부 중심의 통합합동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sup>9)</sup>.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에 의한 합동평가 대상에는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관광, 환경산림, 안전관리 등 총 8개 분야가 있으며, 이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의 성과 지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산출통계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초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는 2006년 이래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매년 실시되었으며, 2009년도부터는 안전행정부의 시·도 합동평가 자료 중 복지분야 자료를 재분석하여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하고 있다. 2009년의 평가들은 복지총괄, 노인복지, 아동청소년, 보육, 장애인복지, 지역사회서비스, 기초생활보장, 자활, 의료급여의 9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 8개 평가지표, 23개 세부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복지종합평가의 평가지표 중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산출 통계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살펴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복지영역별 평가지표(2012년)의 산출가능성

복지영역	평가지표	산출 가능 여부
복지총괄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
	• 기부식품 활성화 정도	×
노인	• 노인요양시설 입소율 및 종합재가기관 확충률	○
	• 기초노령연금 사후관리의 적절성	×
아동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디딤씨앗통장 신규개설률)	○
보육	•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
	• 취약보육 실시율	○
장애인	• 장애인연금 지급률	○
	•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
지역사회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행률	×
	• 위기가구 통합서비스(사례관리) 추진실적	×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률	×
기초생활보장	• 신규 수급자 발굴 실적	○
	• 수급자 관리 실적	○
	• 급여조정 실적	○
	• 긴급복지 지원실적	○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

9) 정영철 외(2011).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PHIS 활용 및 제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2〉 계속

복지영역	평가지표	산출 가능 여부
자활	•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
	•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실적	○
	• 수급자의 취·창업률	○
의료급여	• 전체수급자의 의료급여 일 수 및 진료비 증감률	×
	• 사례관리 대상인원 목표 달성률	○
	•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 일 수 및 진료비 증감률	×
	• 의료급여관리사 무기계약 전환율	×

주: 평가지표 중 일부항목과 관련되는 경우도 ○로 표기  
 자료: 김승권 외(2011)<sup>10)</sup>를 참조하여 정리

이상에서 나타나듯이 복지분야 성과지표에서 요구되는 지표의 상당수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산출 통계와 관련되지만, 별도의 가공없이 현재 통계를 직접 활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자료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후 평가지표 개발 시 관련 시스템 자료의 산출가능성 혹은 산출방안에 대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정부 정책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성과지표를 추가적으로 개발하도록 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평가와 정보시스템 자료 간 유기적인 체계를 구성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기획 및 평가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4) 통계 이용의 다각화

현재 통계서비스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

체 사업담당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으며 제공되는 통계도 사업수행 상에 필요한 현황통계 및 업무지원 통계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의 40%에 해당하는 복지사업 정보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관리되는 만큼 통계이용자를 다각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따른 통계 생성도 필수불가결하다. 먼저, 통계이용자는 일반국민 또는 연구단체 및 민간기관 등의 전문가를 고려할 수 있으며 대상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차별화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복지 통계자료의 종합적인 제공을 위한 통계 포털 확대, 사회보장정책 및 개인수급 관련 통계서비스 제공, 정책 및 사회현상에 대한 지역·서비스 간 비교가 가능한 통계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보건복지 통계 산출이 관련 정부기관의 업무 영역에 따라 분리되고 이와 관련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역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10) 김승권 외(2011). 2011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 결과분석 연구, 보건복지부.

국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조회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이용자의 요구 및 전문성에 따라 통계를 이용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커스트마이징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며, 세부적인 기능 차원에서는 원하는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통계를 함께 제공하고, 산출되는 통계를 시각화 하여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단체 및 민간기관의 전문가에게는 오픈데이터 서비스를 실시하여 다양한 통계 수요 대비 통계 제공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 공유는 연구자 및 민간 전문가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연구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며, 현안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을 위한 협력의 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의 공유를 통해 유사 자료의 중복생산 제거로 사회적 비용절감의 효과를 거둘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를 통해 간접적으로 데이터 품질 향상, 새로운 지식정보 창출이라는 부수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4. 결론

본 고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통계 산출현황 및 제한점을 살펴보고, 맞춤형 복지정책 지원 측면에서 향후 발전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수집되는 자료를 보면, 공공부조를 포함한

복지사업 수급자의 수혜이력(신청, 복지급여 및 서비스 지원내역)과 자격정보(인적정보, 소득재산, 부양의무자)가 핵심 정보라 할 수 있다. 그 수준을 2012년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범부처 복지사업 296종과 비교해 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118종(약 40%)에 해당하는 복지사업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을 감안할 때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근간으로 수급현황, 급여액, 수급자의 자격 특성 중심의 통계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시설·법인, 아동청소년복지, 보육, 한부모가족지원, 결혼중개업, 자활사업, 기초노령연금 등 개별사업 및 통합적 관점에서 산출되고 있다. 보유 자료와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면 현재 산출되는 통계는 향후 범부처 복지사업을 포함한 통계와, 수혜이력을 통한 사업간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생산으로의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더불어 시점별(년, 월)로 지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단위의 통계를 시의적으로 생산·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닌다. 그러나 현재 생산통계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 공무원의 수요에 기반하여 복지사업 실적파악을 위한 현황 통계 중심으로 산출되고 있다. 또한 통계 이용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통계 제공은 정형화된 통계와 OLAP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통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통계는 대부분 통계표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사용자의 다양한 통계 수요를 충족하고자 OLA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용방법이 어려워 활용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현재 산출되는 통계의 제한점을 넘어서,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의사결정 정보를 지원하기 위해 네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다양한 복지사업정보를 관리하는 정보원으로써 이와 관련된 사회보장통계의 발굴, 작성 및 지원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월별 지역단위의 통계 산출이 가능하여 지역복지계획에 필요한 통계의 발굴·제공 필요성을 제시

하였다. 셋째, 복지사업 현황 파악에서 탈피하여 복지사업 성과를 가늠하기 위한 지표 생산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통계 이용의 다각화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현재 제한적 통계제공 및 서비스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과 민간 및 연구단체의 전문가로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대상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이와 함께, 통계 품질 제고 뿐 아니라, 복지사업 간 체계적인 통계 산출 및 가공을 위한 심층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첨언하였다. 